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연금저축 추가납입특약

2. 적용대상계약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해당하는 연금저축 상품

3.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가. 추가납입특약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당월 주계약 기본보험료 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다.

나. 추가납입특약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는 연간 주계약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 이내, 주계약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특약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함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한다.)은 1,800만원 이내로 한다.

4. 기타

가.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한도 등의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기타 사항은 주계약에 준함.